

## [2023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심사 프로세스]

❖ 학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

가. 자격시험(어학시험/종합시험) 합격자(연구계획서 제출 직전 학기)

나. 총평량평균 : 3.0 이상

다. 이수학점

- 석사/박사과정 : 30학점 이상
- 통합과정 : 54학점 이상
- 연구지도 등 보충 및 청강과목은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

라. 학위논문심사를 위한 연구계획서 제출 자격

- **상기 가) ~ 다)항 요건 충족된 자**
- 단, 학점은 수강 신청학점도 해당 학기 학점이수를 전제로 이수학점에 포함 가능(단, 미 충족 시 졸업 불가)
- 박사과정은 연구계획서 제출 학기에는 논문심사 불가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가능
- **휴학 또는 제적 학기에는 연구계획서 제출 불가(중요)**

마. 연구지도 교과목 이수(중요, 미충족 시 졸업 불가)

- **연구계획서 승인 이후 석사 학위과정은 '연구지도 I' 1학기 이상, 박사 학위과정은 연구지도 II'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**
- 연구계획서 승인 학기부터 연구지도 이수내역이 졸업요건에 반영되므로, 연구지도(I 또는 II) **수강 삭제 및 철회로 연구지도가 미충족 되지 않도록 유의(학과와 개별 연구지도와 다름, 혼동 주의)**
- 연구계획서 승인 이후 연구지도 이수 학기 반드시 확인 필요.(중요)

1. 연구계획서 제출자격 : **직전 학기(2023-1)까지 자격시험(외국어, 종합시험)을 합격하고 연구계획서 제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학사포털로 연구계획서를 제출**할 수 있습니다. (단, 2023-2학기 휴학생은 연구계획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복학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휴학 중 제출한 연구계획서는 삭제됩니다.)

2.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절차

※ **중요: 연구계획서는 반드시 학생이 학사포털로 제출해야 함.**



가. (심사유형지정) 포털에서 **졸업심사 유형을 '학위논문'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**하고 '지정' 버튼 클릭(필수)  
(지정 버튼 미클릭 시 연구계획서 제출화면으로 이동 안 됨, 유의)

나. (연구계획서 작성·제출) 연구계획서 제출화면에서 **연구계획서 정보를 입력한 뒤 '제출' 버튼을 클릭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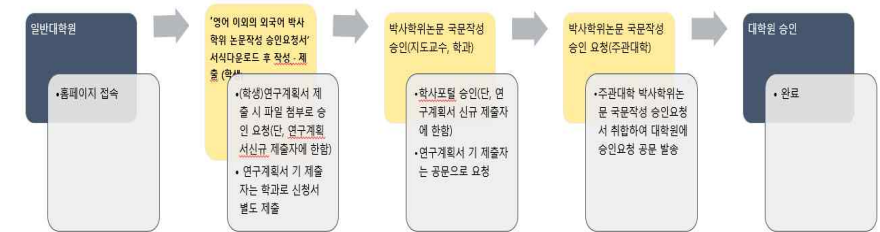
다. (연구계획서 승인) 연구계획서 승인은 지도교수, 학과, 대학원으로 **순차적 승인이 완료되어야 최종 완료 됨**

3. **연구계획서 제출 기간 및 영문성명(여권과 동일하도록 권장) 지정** 기간 : **23. 8. 17(목) ~ 9. 15(금) 17:00까지**  
- 학사포털의 영문성명은 모든 증명서에 반영되는 내용이므로 확인 필수

4. **박사학위논문 영문 작성**

-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3조(학위논문) 2항에 따라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6년 2학기 신입생부터 논문의 영문 작성을 의무화 함.
- 단, 영문 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는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국문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음

※ **중요 : 박사학위논문을 국문 또는 기타의 외국어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할 경우 23. 9. 15(금) 까지 연구계획서 제출 시 신청서를 파일로 첨부해서 지도교수, 학과, 대학원의 승인을 받아야함.**



\* '영어 이외의 외국어 박사학위논문 작성승인요청서' 서식 다운로드

대학원 홈페이지 → 학사안내 → 각종 양식 → 학위논문/졸업 관련 서류 양식 → '국문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 박사학위논문 작성 승인 요청서' 다운로드

5. **논문심사위원명부 등록 및 승인**

- (학생)심사위원명부 포털 등록: **23.9.18(월) 17:00까지** → (학과) 심사위원등록승인: **23.9.20(수) 17:00까지**  
심사위원 본고 재직 여부에 따라 **교내,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분하여 입력**

- 석사/통합(중단) 과정 : **연구계획서 승인 후 학위논문 심사위원 등록(심사위원장, 심사위원)**

- 박사/ 통합 과정 : **학위논문 심사 학기에 학위논문 심사위원 등록**

(유의, 연구계획서 제출 학기에는 지도교수만 입력됨)

| 심사위원 구분<br>(재직여부에 따라 구분: 교원번호 유무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교직원<br>번호 | [학사포털 심사위원등록]<br>출입 > 학생 > 논문심사위원등록 :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, 내부/외부 선택하여 입력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교<br>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고 및 국제캠퍼스 소속으로<br>교직원번호가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O         | 심사위원장<br>심사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료원, 미래캠퍼스 소속으로<br>교직원번호가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교<br>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외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<br>(즉, 본고(국제캠퍼스), 의료원,<br>미래캠퍼스 소속이 아닌 외부<br>박사학위 소지자) | X         | 외부 심사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가. 교내(내부) 심사위원 : 전임 및 비전임 교원

- 1) 본교 소속 : 교직원(급여)번호와 심사위원번호 일치 확인
- 2) 본교 의과대학·치과대학·간호대학 및 미래캠퍼스
  - 교직원(급여)번호와 심사위원번호 일치 확인
- 3) 주의사항: **명예교수는 '내부 심사위원번호'를 사용 - 교직원번호가 있는 경우(내부)**

나. 교외(외부) 심사위원 (석사는 1명, 박사는 2명까지 선정 가능, 외부 심사위원 인원수 준수 필)  
: 본교(국제캠퍼스), 의료원, 미래캠퍼스 소속이 아닌 외부 박사학위 소지자, **퇴임교원**

- \*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2조에 의해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함
- : 박사과정은 연구계획서를 승인받은 학기에는 심사를 받지 못하고, 그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진행하게 됨을 각별히 유의!

대학원 학칙 제 7장 학위논문

제31조의2(교원 자녀 논문 심사위원 관리)

-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본인의 자녀가 작성한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소속 주임교수 및 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6.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

제4조(논문지도교수 자격)

- ① 우리 대학교의 교수,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.
- ②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, 박사학위과정 및 석·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심사위원 선정)

- ③ 심사위원은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 3인,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하며,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,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할 수 있다.
- ④ 심사위원 자격은 제4조에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.

6. 학위논문 예비심사

- 예비심사 : **23. 9. 22(금) ~ 10. 25(수)까지**
-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: 학과 지정 기간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
- 예비심사 결과 입력 마감(학과): **23. 10. 25(금) 23:59분까지**

7. 학위논문 본심사

- 본심사 : **23. 11. 17(금) ~ 12. 20(수) 까지**
- 본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: 학과 일정에 따라 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
- 본심사 결과 입력 마감(학과): **23. 12. 22(금) 23:59분까지**

8.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(예정: 제출일은 변경될 수 있음)

- 온라인 제출 마감(예정) : **23. 12. 26(화) ~ 24. 1. 2(화)**
- 책자논문 완성본 제출 마감(예정) : **24. 1. 3(수) ~ 24. 1. 10(수)**
- 제출처 : 연세·삼성학술정보원1층 전시실
- ※ 인준서 날인(본심사 후 심사위원의 부재)이 늦어져 온라인 및 완성본 제출이 늦어질 수 있으니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!!!

9. 학위수여 예정 증명서 발급 : 예비심사 종료 후 예심 합격자에 한해 23. 11. 1 이후에 '학위수여 예정 증명서'를 해당학기 졸업사정 전까지 발급 가능하며, 23-2학기 졸업사정 이후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행 대상이 졸업예정자로 대체됩니다.

10. 유의사항

- 효율적이고도 원활한 학사행정을 위하여 위에 명시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고, 미 이행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특히, 본심에 합격하였을지라도 완성된 학위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,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다음 학기에 졸업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.

연 세 대 학 교 대 학 원